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제864호 2022. 6. 22.[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 2022-72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거창군 고시 제 2022-74호 가조면 용당소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4

거창군 고시 제 2022-75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2-927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6

거창군 공고 제2022-93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6

거창군 공고 제2022-947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지원, 지청), 도로(중로2-4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1

거창군 공고 제2022-948호 2022년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28

거창군 공고 제2022-957호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9

거창군 공고 제2022-962호 (주)삼성개발 토석채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39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2-72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거창군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거창정수장	거창읍 양평리 458-20번지 일원	22,912	증)2,782	25,694	거고43호 (2008.09.25.)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거창정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거창읍 양평리 458-20번지 일원 • 면적: 22,912m²→25,694m² (증 2,78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거창정수장을 증설하고자 함

2. 관계 도면 : 실음생략

3.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조면 용당소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승인 고시

“가조면 용당소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3항,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가조면 용당소지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마을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3. 사 업 비 : 500백만원
4. 주요사업내용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09번지 일원
나. 세부사업 내용
- 기초생활기반 :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수변공간 정비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2년 (2년)
7.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문의(☎055-940-8273)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22.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상궁항길 54 등 1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927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용어 순화 및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둠(안 제16조)
- 용어 순화 및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라 정비
(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 위원회 운영세칙 신설(안 제24조)

3. 붙임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복나눔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복나눔과)
- 전화 : 055)940-3153
- 팩스 : 055)940-3739
- 이메일 : kjw0809@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를 “군민”으로 한다.

제16조 조 제목 “(설치)”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자문을 요구하는”을 “자문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사업소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을 “장기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23조 조 제목 “(간사)”를 “(간사 및 회의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분과위원회는 제16조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u>군의</u>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u>군민</u>,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u>,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u>군민</u>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6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p> <p>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u>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신 설></p>	
<p>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 	<p>제1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

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업무 관련 실·과·사업소장
2.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업무 관련 부서의장
2.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전문직 여성·직장여성·전업주부·영유아 돌봄 여성·소외계층 여성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24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1099호선(가조IC~면소재지) 확포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거창군수

1. 도로의 명칭 : 지방도 1099호선

2.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2022. 1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지방도1099호선 (가조IC~면소재지) 확·포장공사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7-10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699-40	○ 연장 : 1,286.0m ○ 폭원 : 20.0m	거창군수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열람기간
거창군청 건설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2022. 6. 20. ~ 2022. 7. 4.(14일간)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2. 6. 20. ~ 2022. 7. 4.(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 소	
1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7-10	167-10	답	473	81	거창군		
2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8-1	168-1	답	443	70	거창군		
3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7-8	167-8	천	62	42	거창군		
4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7-11	167-11	답	32	23	거창군		
5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7	17	답	228	50	거창군		
6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7-9	167-9	천	56	10	거창군		
7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5	165-3	대	456	194	경상남도		
8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6-9	166-9	천	11	1	거창군		
9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6-4	166-4	구	41	16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 동 487	
10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6-5	166-12	천	39	25	경상남도		
11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3-1	163-1	임	145	88	거창군		
12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860	860	천	37,504	1,318	국 (국토교통부)		
13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49-3	949-5	잡	136	10	경상남도		
14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50-1	950-5	잡	851	91	김*근	경상남도 거창군 가 조면 마상리 313-1	
15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46-15	946-15	도	1,938	1,608	국 (국토교통부)		
16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5-15	965-15	도	705	457	국 (국토교통부)		
17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5-21	965-21	임	1,203	19	국 (국토교통부)		
18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5-20	965-20	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19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46-13	946-13	도	1,629	1,629	거창군		
20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53-2	153-4	전	1,485	23	경상남도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 소	
21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1-2	161-2	천	38	38	이*란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3-3	
22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2-9	162-9	천	51	17	경상남도		
23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55-11	155-11	도	227	10	거창군		
24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2-10	162-10	천	5	5	이*문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20	
25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3-3	163-3	임	36	36	신*억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3-3	
26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3-2	163-2	도	46	46	신*억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3-3	
27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2-11	162-11	천	1	1	이*용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62-6	
28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94	1194	천	20,768	457	국 (국토교통부)		
29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51-2	951-2	주	828	58	정*영외1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강남로 266 103동 1101호	
30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46-12	946-12	도	1632	1579	거창군		
31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57	957-1	답	1,020	75	정*영외1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강남로 266 103동 1101호	
32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55-2	955-4	답	148	59	김*희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송정2길 33 105동 2003호	
33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59	959-2	답	634	54	김*희	경상남도 거창군 거 창읍 송정2길 33 105동 2003호	
34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58-1	958-3	답	1,806	191	정*강	경상남도 거창군 가 북면 용산1길 51-8	
35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1-4	961-4	답	11	11	국 (국토교통부)		
36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46-16	946-16	도	43	43	국 (국토교통부)		
37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1-1	961-1	도	165	150	국 (국토교통부)		
38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58	958-2	답	4,234	183	정*강	경상남도 거창군 가 북면 용산1길 51-8	
39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1-5	961-5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40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3-1	963-10	답	887	6	변*교	경상남도 거창군 가 조면 수월리 산 109-4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 소	
41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3-8	963-8	답	181	178	국 (국토교통부)		
42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3-9	963-9	답	235	213	국 (국토교통부)		
43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3-7	963-7	답	4	3	국 (국토교통부)		
44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8-1	968-1	과	25	9	국 (국토교통부)		
45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7-2	967-2	과	358	228	국 (국토교통부)		
46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7-4	967-4	과	236	228	국 (국토교통부)		
47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66-2	966-2	전	14	12	국 (국토교통부)		
48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259	1259	도	626	17	국 (국토교통부)		
49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79-4	979-4	답	252	56	국 (국토교통부)		
50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77-2	977-2	답	185	16	국 (국토교통부)		
51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77-4	977-4	답	48	7	국 (국토교통부)		
52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33-4	1133-4	답	5	4	국 (국토교통부)		
53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33	1133	답	565	18	국 (국토교통부)		
54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980-2	980-2	도	613	2	거창군		
55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33-1	1133-1	도	121	16	국 (국토교통부)		
56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257-5	1257-5	구	1244	13	국 (국토교통부)		
57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22	1122	도	8038	14	국 (국토교통부)		
58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261	1261	도	502	103	국 (국토교통부)		
59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36	1136	도	5861	53	국 (국토교통부)		
60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39	1139	도	10	10	이*도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18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당초 지번	편입 지번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또는 명칭	주 소	
61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40-1	1140-1	도	50	8	거창군		
62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31-2	1131-2	도	463	114	이*준	등기부없음	
63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31-1	1131-1	도	499	38	거창군		
64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140-2	1140-2	도	264	65	거창군		
65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48	1048	도	365	150	거창군		
66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47	1047	구	7116	70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48-3	1048-3	도	331	9	거창군		
68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52-2	1052-2	도	1088	248	거창군		
69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82	1082	도	727	108	거창군		
70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82-2	1082-2	도	191	42	거창군		
71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090-3	1090-3	도	422	87	거창군		
72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699-40	699-40	제	386	4	국 (국토교통부)		
계					111,286	11,161			

거창군 공고 제2022-947호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지원, 지청), 도로
(중로2-4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일원에 시행계획중인 “거창 지원, 지청 이전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22.

거창군수

1-1. 사업시행 개요(공공청사 : 거창지원, 거창지청)

종류	명칭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	거창지원	거창읍 상림리 산23번지 일원	22,490	경남도 고시 제2016-73호 (2016. 3. 3.)	2022. 7. 1. ~ 2023. 12. 31
도시계획시설	거창지청	거창읍 가지리 1343-7번지 일원	20,120	경남도 고시 제2016-73호 (2016. 3. 3.)	2022. 7. 1. ~ 2023. 12. 31

1-2. 사업시행 개요(도로 : 중로2-48호선)

종류	명칭	위치		시행 규모					시행 구간	최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거창	상림	중로	2	48	377	15.0	중로1-16호선 ~ 소로1-75호선	거창군 고시 제2016-26호 (2016. 3. 3.)	2022. 7. 1.~ 2023. 12. 31.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거창군수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79, 거창군청(도시건축과)

3. 열 략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제외)

4. 열 략 장 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게재생략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1. 공공청사(거창지원)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37필지		20,696	20,271					
1	거창읍 가지리	1345-52	전	332	332	미등기		재단법인 경상 남도향교재단	창원시 소남동 433- 2	토지대장상 소유자
2	거창읍 가지리	1345-55	전	10	10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45-61	전	72	72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45-40	전	79	79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54-25	임	224	224	거창군				
6-1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 1/2	윤○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계방길 ○			
6-2	거창읍 가지리	1345-28	전	985	985× 1/2	서○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 66, 102동 ○호(봉덕동, 앞 산힐스테이트)			
7-1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 1/2	윤○석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계방길 ○			
7-2	거창읍 가지리	1354-13	임	124	124× 1/2	서○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 66, 102동 ○호(봉덕동, 앞 산힐스테이트)			
8	거창읍 가지리	1354-22	임	1,137	1,137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남동 ○			
9	거창읍 가지리	산103-1	임	992	992	장○수	거창군 거창읍 하동 ○			
10	거창읍 가지리	1343-2	전	248	248	장○수	거창군 거창읍 하동 ○			
11	거창읍 가지리	1345-56	전	50	50	거창군				
12	거창읍 가지리	1345-3	전	351	351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재단	부산 충무로4가 ○			
13	거창읍 가지리	1297-15	임	164	164	거창군				
14	거창읍 가지리	1343-13	전	3,055	3,055	장○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28-1 유승베스트빌 ○			
15	거창읍 가지리	1323-59	전	266	266	거창군				
16	거창읍 가지리	산104-1	임	1,006	600	장○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428-1 유승베스트빌 ○			
17	거창읍 가지리	1336-9	전	347	340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어)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18-1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 1/2	신○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18-2	거창읍 가지리	산104-12	임	73	73× 1/2	변○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10,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19-1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 1/2	신○갑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9-2	거창읍 가지리	1343-7	전	849	849× 1/2	변○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9길 10, ○호 (한성사랑채아파트)			
20	거창읍 가지리	산104-13	임	1,035	1,035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엄)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21	거창읍 가지리	1343-9	전	114	114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엄)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22	거창읍 가지리	1336-8	전	532	520	김○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84번길 21, 105동 ○호 (망포동, 그대가 프리미엄)	거창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14-1	근저당권, 지상권
23	거창읍 가지리	1343-3	전	344	344	주식회사 장○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호(양덕동, 삼성비킹공상가)	주식회사경남 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4	거창읍 가지리	1343	전	565	565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파트)			
25	거창읍 가지리	1343-8	전	238	238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파트)			
26	거창읍 가지리	1343-10	전	1,363	1,363	주식회사 장○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호(양덕동, 삼성비킹공상가)	주식회사경남 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7	거창읍 가지리	산102-2	임	595	595	주식회사 장○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호(양덕동, 삼성비킹공상가)	주식회사경남 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28	거창읍 가지리	1342-1	과	1,022	1,022	이○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봉길 58, ○호(공작아파트)			
29	거창읍 가지리	산102-7	임	623	623	주식회사 장○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호(양덕동, 삼성비킹공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0	거창읍 가지리	1343-11	전	268	268	주식회사 장○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호(양덕동, 삼성비킹공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상권
31	거창읍 가지리	산102-8	임	26	26	주식회사 장○종합건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용마로 142, ○호(양덕동, 삼성비킹공상가)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42 (석전동) (양덕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지 상권
32	거창읍 상립리	410-13	전	1,242	1,242	유○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 ○	이성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111(서둔동)	근저당권
33	거창읍 상립리	410-16	전	1,790	1,790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34	거창읍 상립리	410-14	전	470	470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35	거창읍 상립리	753-1	도	15	15	국(국토교통부)				
36	거창읍 상립리	410-9	전	50	50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37	거창읍 상립리	410-17	전	40	40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원예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55	근저당권, 지상권

2. 공공청사(거창지청)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48필지		22,593	22,593					
1	거창읍 가지리	1354-27	임	3	3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1354-1	임	449	449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3	거창읍 가지리	1345-14	전	193	193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부산 충무로4가 ○			
4	거창읍 가지리	1345-13	전	167	167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5	거창읍 가지리	1345-57	전	32	32	거창군	-			
6	거창읍 가지리	1345-43	전	46	46	거창군	-			
7	거창읍 가지리	1345-49	전	10	10	거창군	-			
8	거창읍 가지리	1345-44	전	848	848	거창군	-			
9	거창읍 가지리	1354-26	임	21	21	거창군	-			
10	거창읍 가지리	1354-23	임	3,447	3,447	거창군	-			
11	거창읍 가지리	1354-24	임	8	8	거창군	-			
12	거창읍 가지리	1345-45	전	3,092	3,092	거창군	-			
13	거창읍 가지리	1345-58	전	60	60	거창군	-			
14	거창읍 가지리	1345-22	전	55	55	거창군	-			
15	거창읍 가지리	1345-23	전	75	75	거창군	-			
16	거창읍 가지리	1345-59	전	25	25	거창군	-			
17	거창읍 가지리	1354-17	임	85	85	거창군	-			
18	거창읍 가지리	1354-21	임	20	20	거창군	-			
19	거창읍 가지리	1345-48	전	1	1	거창군	-			
20	거창읍 가지리	1345-47	전	154	154	거창군	-			
21	거창읍 가지리	1345-46	전	153	153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22	거창읍 가지리	1345-50	전	28	28	거창군	-			
23	거창읍 가지리	1345-60	전	2	2	거창군	-			
24	거창읍 가지리	1345-26	전	23	23	거창군	-			
25	거창읍 가지리	1345-25	전	55	55	박옥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26	거창읍 가지리	1345-24	전	114	114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			
27	거창읍 가지리	1354-29	임	55	55	미등기	-	재단법인 경상 남도 향교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소담동 433-2	토지대장상 소유자
28	거창읍 상림리	410-4	전	169	169	장봉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29-1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	장수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7-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9-2	거창읍 상림리	412-4	전	105	105×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장수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7-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거창읍 상림리	410-19	전	107	107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원예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55	근저당권, 지상권
31	거창읍 상림리	410-8	전	261	261	거창군	-			
32	거창읍 상림리	410-22	전	632	632	거창군	-			
33-1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			
33-2	거창읍 상림리	412-11	전	5,812	5,812×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34-1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			
34-2	거창읍 상림리	산19-4	임	32	32×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35	거창읍 상림리	412-16	전	1,250	1,250	거창군	-			
36	거창읍 상림리	산21-10	임	365	365	거창군	-			
37	거창읍 상림리	산23	임	298	298	미등기	-	이원중무	송정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8	거창읍 상림리	산22	임	99	99	미등기	-	이원중무	송정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39	거창읍 상림리	산21-9	임	1,193	1,193	거창군	-			
40	거창읍 상림리	412-13	전	516	516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46, 비동 ○호 (영창빌라)	북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6 (웅양지점)	근저당권
41	거창읍 상림리	412-12	전	4	4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46, 비동 ○호 (영창빌라)	북부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6 (웅양지점)	근저당권
42-1	거창읍 상림리	산21-11	임	1,307	1,307× 1/3	박○영	경상남도 거창군 고계면 산양길 ○			
42-2	거창읍 상림리	산21-11	임	1,307	1,307× 1/3	오○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101동 ○호 (상림리사랑채아파트)			
42-3	거창읍 상림리	산21-11	임	1,307	1,307× 1/3	박○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101동 ○호 (상림리사랑채아파트)			
43-1	거창읍 상림리	412-14	전	116	116× 1/3	박○영	경상남도 거창군 고계면 산양길 ○			
43-2	거창읍 상림리	412-14	전	116	116× 1/3	오○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101동 ○호 (상림리사랑채아파트)			
43-3	거창읍 상림리	412-14	전	116	116× 1/3	박○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8길 13, 101동 ○호 (상림리사랑채아파트)			
44	거창읍 상림리	산25-10	임	48	48	거창군	-			
45	거창읍 상림리	산25-11	임	878	878	거창○씨 참여공파중증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46	거창읍 상림리	703-10	전	33	33	거창○씨 참여공파중증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47	거창읍 상림리	702-7	전	151	151	거창○씨 참여공파중증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48	거창읍 상림리	702-8	전	5	5	거창군	-			

3. 도로(중로2-4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거창군)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3필지		5,295	3,392					
1	거창읍 가지리	1345-62	전	3	3	거창군	-			
2	거창읍 가지리	1345-39	전	319	128	거창군	-			
3	거창읍 가지리	1345-54	전	72	72	거창군	-			
4	거창읍 가지리	1345-53	전	73	73	미등기	-	박옥자	1349	토지대장상 소유자
5	거창읍 가지리	1345-51	전	591	591	미등기	-	재단법인경상 남도향교재단	창원시 소남동 433-2	토지대장상 소유자
6	거창읍 가지리	1354-28	임	288	288	미등기	-	재단법인경상 남도향교재단	창원시 소남동 433-2	토지대장상 소유자
7	거창읍 상림리	410-15	전	936	936	장○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하동 ○			
8-1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	장수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7-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8-2	거창읍 상림리	412-15	전	56	56×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장수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7-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9	거창읍 상림리	410-18	전	819	819	박○수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	거창사과원예 농업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55	근저당권, 지상권
10	거창읍 상림리	410-10	전	15	15	최○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창남1길 40, 105동 ○호 (김천주공아파트)			
11	거창읍 상림리	410-21	전	7	7	오○옥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12-1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1/2	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4-1 현대아파트 ○	장수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7-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12-2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1/2	김○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03-2 동원그린빌 ○	장수영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67-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13-1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1/25	양○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65 송도힐스테이트 ○			
13-2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3/50	양○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 대로130번길 80, 107동 ○호 (송도동, 송도푸르지오하버뷰)			
13-3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385× 45/50	주식회사 제○구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대로11길 36, ○호 (양재동, 서울오토갤러리)			

2022년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 공고

「교통안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거창군수

1. 공 고 명 : 2022년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
2. 공고기간 : 2022. 6. 20. ~ 2022. 7. 11.(21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개 요

- 1) 계획기간 : 2022년
- 2) 대 상 : 거창군 관내
- 3) 내 용 : 2022년 거창군 교통안전시행계획

나. 주요내용

- 1) 목표 및 추진방향
- 2) 2021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3) 2021년 성과분석 및 추진 실적
- 4) 2022년 교통사고 감소 목표
- 5) 2022년 교통안전시행계획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8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참조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일부 개정(2021.12.30.)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일상복)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일 경우에도 교복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 및 교복자율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안교육기관” 용어추가 (안 제2조)

나. 제2호와 제3호를 삭제 (안 제2조)

다. “교복구입비” 를 “교복구입비 등” 으로 용어변경(안 제3조~제8조)

라.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 제2호)

마.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국외에서 거창군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도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4조 제5호)

4. 예고기간 : 2022. 6. 21.(화) ~ 7. 11.(월)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7. 11.(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 1)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인구교육과)
- 2) 전화 055-940-8813, 팩스 055-940-8905, 이메일 ay1357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교육진흥담당
【☎(055)940-88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의 제목 “(교복구입비의 지원)” 을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 교복 구입비
2.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제1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

제4조 중 “교복구입비” 를 “교복구입비등” 으로 한다.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국외에서 거창군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을 신설하고,

제5조 제1항 중 “교복구입비” 를 “교복구입비등” 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제4조 제2항으로 이동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교복구입비를” 을 “교복구입비등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를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 로
한다.

제8조 중 “교복구입비를” 을 “교복구입비등을” 로 한다.

부 칙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p> <p>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을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p> <p>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p> <p>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p> <p>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p> <p>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p> <p>3. 다른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p> <p>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삭 제></p> <p><삭 제></p> <p>제3조(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교복을 입는 학교: 교복 구입비</p> <p>2.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제1호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p> <p>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p> <p>1.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p> <p>2. 다른 시·군 또는 국외에서 거창군 소재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p> <p>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등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p> <p>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p>

현행	개정안
<p>제5조(지원 금액) <u>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u> <u>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u>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p> <p>제6조(지원 절차) ① <u>교복구입비를</u>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u>교복구입비</u>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u>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u>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p> <p>제8조(환수)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u>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u>교복구입비를</u>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교복구입비를</u>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p>	<p><u>지원받은 경우</u></p> <p>제5조(지원 금액) <u>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u> <삭 제>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제4조제2항으로 이동</p> <p>제6조(지원 절차) ① <u>교복구입비등을</u>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u>교복구입비등</u>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등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등을</u>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p> <p>제8조(환수)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u>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u>교복구입비등을</u>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교복구입비등을</u>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p>

관 련 법 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3. “교복”이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전문개정 2021.12.30.>

-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지원 금액)

- 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12.30.>
-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정 2021.12.3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정 2021.12.30.>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 중학교 학생과 2021년 고등학교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주)삼성개발 토석채취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산47번지 일원의 「(주)삼성개발 토석채취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2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주)삼성개발 토석채취사업

나. 사업위치 :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산47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면적 : 193,162㎡(기 허가구역 93,645㎡ + 신규 개발구역 99,517㎡)

- 채취량 : 5,966,141㎡(기허가 채취량 1,980,293㎡ + 추가 채취량 3,985,848㎡)

라. 시행자 : (주)삼성개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2.6.22. ~ 2022.7.10

나. 공개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s://www.geochang.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거창군 산림과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4. 기타 상세내용은 거창군 산림과(055-940-3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삼성개발 토석채취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2. 주민의견 제출서